

## 언론보도에 있어서 익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Celle 고등법원 1988. 9. 9 자 결정

- I3W 135/88 사건 -

###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004 조.

### 판결요지

1. 피해자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 그 자신의 성명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사람이, 조사위원회서의 증언에 관하여 그 시대의 중요인물로 된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데에 가지는 그의 이익은, 자유로운 보도 및 비판에 대하여 가지는 공중의 이익보다도 적은 것으로서, 후자에 양보하여야 한다.

### 판결이유

지방법원은 가처분 피신청인에 대한 가처분의 발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신청인의 직무상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로 하여금 신청인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여 주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신청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직무상의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역시 인격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언론은 신청인의 직무상의 활동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경찰 및 헌법수호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그 국가적인 기관의 활동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 또한 이를 토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GH, NJW 81, 1366-Wallriff II). 이와 같이 신청인의 활동에 대하여 일반인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Niedersachsen 주 의회의 조사위원회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격권 보호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자신의 성명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 즉 다른 말로 하면, 익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의 직무상의 행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과는 원래부터 당연히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사의 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인물에 대하여는 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3 Abs. 1 Kunst UrhG analog). 이와 같은 결론은 소위 현대사에 있어서의 중요인물 즉,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일반대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그 결과 일시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Löffler/Rieter, Presserecht, 2.Aufl, S. 292;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 Rd.- Nr. 10.3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가처분신청인의 인격권과,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의 사이의 가치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바, 이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유로운 정보 및 비판에 대하여 가지는 공공의 이익과를 서로 비교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신청인이 그의 이름을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재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대중의 정보에 대한이익은 특별히 크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로 되고 있는 기사는 정치적인 문제 즉 경찰 및 헌법수호기관의 특정한 업무처리방식의 허용 또는 금지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사위원회가 위 문제의 조사에 스스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전체국민을 대신하여 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위 위원회가 그 회의 결과를 공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회의의 결과를 완전하게 알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즉 일반국민은 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추적하고, 위 위원회가 조사한 증인의 진술을 스스로 토론하고 나아가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할 사항에는 증인의 개인에 관한 지식도 포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그 진술의 의미 및 신빙성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가처분신청인은 그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된다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의 국민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헌법수호기관을 위한 신청인의 활동이 보도되게 되면, 신청인은 불쾌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의 친구들에 대한 그의 사적인 관계가 침해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당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보도기사는 단지 신청인의 직무상의, 그리고 정당한 활동에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의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청인 개인의 명예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사는 신청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 즉, 형사범죄 사건이나, 명예에 관련된 사적인 행동을 보도함으로써 인하여 생길 수도 있는 결과는 야기되지도 아니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직무상 활동에 관한 위 기사가 개개의 경우에는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아니하고,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그의 사생활의 상세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위 보도의 내용, 보도의 방식이나 형태 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 보도는 신청인의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해진 직무상의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하게 되면 이미 그 자체로서 신청인의 명예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신청인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두가지의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보면, 신청인의 인격권은, 일반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양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무상의 활동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